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5. 2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4월 28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년 5월 1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95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3. 5.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한시기구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기구명칭변경, 부서간 업무조정, 팀별 업무이관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 본청 국의 설치
 - 명칭변경 : 행정관리국 → 행정국
- 구 본청 부서명칭변경
 - 환경관리과 → 환경과, 청소행정과 → 청소과
- 업무이관 (제5, 7, 9조)
 - 제5조(행정관리국)을 제5조(행정국)으로 하고, 제1항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며, 제2항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제5조(행정관리국) 제2항 제20호 옥외광고물관리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9조(건설교통국) 제2항 제19호 다음 제20호에 옥외광고물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 제7조(생활복지국) 제2항 제4호 청소년복지, 청소년지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조(행정관리국) 제2항 제20호 다음 제21호에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자부 자제13101-714(2002. 12. 3)호 및 서울시 행정13101-6108(2002. 12. 4)호에 의거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통보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홍수)

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가 2004. 6. 30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일부 업무 등을 조정하고, 기구명칭을 구민들에 익숙한 용어 등으로 일부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당초 2000. 11. 27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서 동 행정 및 새주소업무와 월드컵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옥외광고물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다시 건설관리과로 환원시키고, 그 대신 업무량이 과다한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업무중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로 이관시키는 내용과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새주소업무는 그 기능이 거의 완료되어 관리차원의 업무만 남아 새주소업무는 지적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이관코자 변경하는 것으로 국간의 업무변경사항은 조례개정사항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다만 새주소업무는 세부업무로서 국별업무분장의 조례개정사항은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과별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이번 조직개편은 향후 정부에서 추진중인 "표준정원제"시행 및 새로운 조직기능 검토 등 다양하게 검토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 및 명칭변경에 한정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의회에서 요구한 사회복지과 분리검토 등에 대하여 일부 수용하여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향후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조치로 보이며, 또한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치하는 자치행정과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도 시행규칙개정(안) 등에 포함되어 있고, 다만, 향후 조직개편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여 업무의 유사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당하게 배분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
------------	----

제출년월일 : 2003. 4.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한시기구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기구명칭변경, 부서간 업무조정, 팀별 업무이관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 본청·국의 설치

- 명칭변경 : 행정관리국 → 행정국

나. 구 본청·부서명칭변경

- 명칭변경 : 환경관리과 → 환경과, 청소행정과 → 청소과

다. 업무이관 (제5조, 제7조, 제9조)

- 제5조(행정관리국)을 제5조(행정국)으로 하고, 제1항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며, 제2항 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제5조(행정관리국) 제2항제20호 옥외광고물관리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9조(건설교통국)제2항제19호 다음 제20호에 옥외광고물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 제7조(생활복지국)제2항제4호 청소년복지·청소년지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조(행정관리국)제2항제20호 다음 제21호에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자부 자체 13101-714(2002. 12. 3)호
- 서울시 행정 13101-6108(2002. 12. 4)호
 -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통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중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5조중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0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청소년복지·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를 “환경과 및 청소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청소년복지·청소년지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옥외광고물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행정관리국	제3조(국의 설치) 행정국
제5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
② 행정관리국장	② 행정국장
1~19(생 략)	1~19(현행과 같음)
20. 옥외광고물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신 설〉	20. 〈삭 제〉 21.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복지국) ① 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	제7조(생활복지국) ① 환경과 및 청소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 복지·청소년 지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5~13 (생 략)	5~13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교통국) ① (생 략) ② (생 략) 1~19(생 략) 〈신 설〉	제9조(건설교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19(현행과 같음) 20. 옥외광고물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심사 보고서

2003. 5. 2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4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5월 1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95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3. 5. 13) 상정 의결